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7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8.

발 의 자 : 박해철·박균택·박 정
송옥주·권칠승·장종태
조계원·김정호·김동아
임호선·최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 기간별로 차등적인 유산·사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,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.

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은 산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매우 큰 정신적·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고, 산모의 회복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에 있어서 배우자의 동반 돌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.

특히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과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는 남성 공무원에게 배우자가 유산·사산한 경우 3일간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있어,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.

이에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

에 5일의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, 5일 중 3일은 유급으로 하게 하고,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여, 근로자의 가정 돌봄권 실질적 강화 및 가족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8조제1항·제2항, 제18조의4, 제37조제2항제2호의3 및 제39조제2항제3호의3 신설)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”를 “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,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8조의3제1항 본문”을 “제18조의3제1항 본문, 제18조의4제1항 본문”으로 한다.

제3장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4(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한다. 다만,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)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7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3.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

제39조제3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3.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)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,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,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“출산전후휴가급여등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	제18조(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) ① ----- -----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,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,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, 제18조의3제1항 본문 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.	② ----- ----- -----제18조의3제1항 본문, 제18조의4제1항 본문----- 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8조의4(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

제37조(벌칙) ① (생략)

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2의2. (생략)

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한다. 다만,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)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7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 3. ~ 9. (생 략) ③ · ④ (생 략) 제39조(과태료) ① · ② (생 략)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3의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4. ~ 9. (생 략) ④ · ⑤ (생 략)	<u>2의3.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</u> 3. ~ 9. (현행과 같음)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 제39조(과태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 <u>3의3.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</u> 4. ~ 9. (현행과 같음)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-